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46
----------	-------

발의연월일 : 2025. 7. 3.

발 의 자 : 임태영 · 박덕흠 · 김상훈
이만희 · 윤한홍 · 김재섭
조지연 · 안철수 · 권영진
서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후계자와 독립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명시적인 육성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산림·임업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이들의 체계적인 육성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대상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임업 및 산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예비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임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실습 또는 창업 준비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의3. “청년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39세 이하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 ①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임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교육
2.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창업 자금 지원
3.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주거 및 생활기반 조성

4.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5. 그 밖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3(중전의 제17조의2)제1항 중 “양성하기”를 “양성하고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을 육성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 창출 및 창업에 대한 활성화”를 “고용 창출, 창업에 대한 활성화 및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육성을 위한”으로 한다.

제18조의9제2항 전단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를 “공공기관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예비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임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실습 또는 창업 준비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u> <u>2의3. “청년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39세 이하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u> 3.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 8. (생 략) <u><신 설></u>	<u>제17조의2(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 ①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임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u> <u>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대</u>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교육

2.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창업 자금 지원

3.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주거 및 생활기반 조성

4.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5. 그 밖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
임업인의 육성·지원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
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
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기
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①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림 분야 계열학교가 실시하는 임업실습교육, 임업창업교육 등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8조의9(통계조사) ① (생략)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3(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① -----
-----양성하고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을
육성하기-----

--.

② -----고
용 창출, 창업에 대한 활성화
및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육성을 위한-----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9(통계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공
기관의-----

<u>를」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u>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에게 필 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 -----. ----- ----- ----- -----. ③ (현행과 같음)
---	--